

#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(이경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-207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. 8. 16.  
발의자 : 이경애 의원 외 8명

### 1. 제정이유

- 각종 화재와 구조·구급 업무를 보조하고 또한 시의 각종 봉사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위상을 제고하고,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지원범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-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
### 3. 제정조례안 : 붙임 1

### 4. 관계법령 발췌서 등 : 붙임 2

### 5. 예산수반사항 : 붙임 3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)

### 6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1

### 7. 기타 참고사항 : 붙임 4(집행부검토의견서)

[붙임 1]

##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안산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조례는 안산시 의용소방대(이하 “의용소방대”라 한다)에 적용한다.

**제3조(지원범위)**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
2. 집회,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비용
3.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비용
4.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**제4조(재정지원)**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5조(지도 및 감독)**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지도·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**제6조(목적 외 사용금지)**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, 보조

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,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지급된 보조금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.

1.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
2.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
3.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4.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
제7조(포상)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·구호 활동,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의원	이경애 대표발의 (행정 3569)